

##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107호
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102호, 2024.05.31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
2024년 06월 27일

보건복지부장관

###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

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I.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722-4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[1일당]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| 항 목   | 제 목   | 세 부 인 정 사 항  |
|---|---|--|
| 나722-4<br>동맥압에<br>기초한<br>심기능<br>측정<br>[1일당] | 나722-4<br>동맥압에<br>기초한 심기능<br>측정<br>[1일당]의<br>급여기준 | 1. 나722-4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[1일당]은 스완-간즈 카테터법을 대신하여 실시한 경우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심박출량 측정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<br>- 다음 -<br>가. 심장수술환자<br>나. 장기이식수술환자 |

| 항 목 | 제 목 | 세 부 인 정 사 항  |
|-----|-----|--|
|     |     | <p>다. 중화상환자</p> <p>라. 심박출계수(EF) 0.4(40%)이하의 환자</p> <p>마. ASA-PS 3이상의 환자</p> <p>바.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하여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</p> <p>2. 동일 목적의 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는 경우 주된 검사 한 가지만 요양급여 함<br/>- 다음 -</p> <p>가. 나722 스완-간즈 카테터법에 의한 검사와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</p> <p>나. 너874 침습적동맥압혈압측정[1일당]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</p> <p>다. 바3다 마취중 침습적 동맥압감시[카테터삽입료 포함]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</p> <p>라. 나722-1가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[1일당]-Esophageal Probe와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</p> <p>3. 상기 1.에도 불구하고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에서 세부 인정사항을 별도로 정한 치료 재료는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준을 따름</p> <p>※ 미국마취과학회 신체상태 분류(ASA-PS)</p> <p>1급: 전신질환이 없는 건강한 환자</p> <p>2급: 경한 전신질환이 있으나 생리적 기능 장애는 없는 환자<br/>(예: 합병증이 동반되지 않는 고혈압이나 당뇨병, 만성 기관지염, 비만, 고령의 환자)</p> <p>3급: 신체 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중한 전신질환을 가진 환자<br/>(예: 잘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, 혈관계 합병증이 동반된 당뇨병, 협심증, 심근경색의 병력, 일상 생활에 장애를 줄 정도의 폐질환)</p> <p>4급: 생명에 위협이 되는 전신질환을 가진 환자<br/>(예: 심부전, 불안정형 협심증, 진행된 상태의 폐, 신장 간질환)</p> <p>5급: 수술을 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의 환자<br/>(예: 복부 대동맥류의 파열, 폐색전, 뇌압이 상승된 두부외상)</p> <p>6급: 장기 공여를 위해 수술이 예정된 뇌사환자</p> |

III. 치료재료 제2장 검사료 중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시 사용하는 ACUMEN IQ SENSOR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| 제 목  | 세 부 인 정 사 항  |
|--|--|
| 동맥압에 기초한<br>심기능 측정시<br>사용하는 ACUMEN<br>IQ SENSOR의<br>급여기준 | <p>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시 사용하는 ACUMEN IQ SENSOR는 혈역학적 감시가 필요한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</p> <p>- 다음 -</p> <p>가. 심장수술환자</p> <p>나. 장기이식수술환자</p> <p>다. 박출계수(EF) 0.4(40%)이하의 환자</p> <p>라. ASA-PS 3이상의 환자</p> <p>마. 기타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하여 고위험 수술 등에 저혈압 예측 지표 등의 추가적인 감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</p> |

## 부 칙

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

## 신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개 정  |   |  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|---|---|
| I . 행위<br>제2장 검사료 |             | I . 행위<br>제2장 검사료  |   |   |
| 제 목               | 세 부 인 정 사 항 | 제 목  | 세 부 인 정 사 항   | 비고  |
| <신 설>             | <신 설>       | 나722-4<br><u>동맥압에</u><br><u>기초한 심기능</u><br><u>측정</u><br><u>[1일당]의</u><br><u>급여기준</u> | <p>1. 나722-4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[1일당]은 스완-간즈 카테터법을 대신하여 실시한 경우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심박출량 측정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다음 -</p> <p>가. 심장수술환자<br/>나. 장기이식수술환자<br/>다. 중화상환자<br/>라. 심박출계수(EF) 0.4(40%)이하의 환자<br/>마. ASA-PS 3이상의 환자<br/>바.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하여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</p> <p>2. 동일 목적의 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는 경우 주된 검사 한 가지만 요양급여 함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다음 -</p> | (제정 사유)<br>선별급여<br>적 합 성 평 가<br>결과에 따른<br>급여기준 신설 |

| 현 행 | 개 정  |
|-----|--|
|     | <p>가. 나722 스완-간즈 카테터법에 의한 검사와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<br/>     나. 너874 침습적동맥압혈압측정[1일당]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<br/>     다. 바3다 마취중 침습적 동맥압감시[카테터삽입료 포함]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<br/>     라. 나722-1가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[1일당]-Esophageal Probe와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</p> <p>3. 상기 1.에도 불구하고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에서 세부 인정사항을 별도로 정한 치료재료는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준을 따름</p> <p>※ 미국마취과학회 신체상태 분류(ASA-PS)</p> <p>1급: 전신질환이 없는 건강한 환자</p> <p>2급: 경한 전신질환이 있으나 생리적 기능 장애는 없는 환자<br/>     (예: 합병증이 동반되지 않는 고혈압이나 당뇨병, 만성 기관지염, 비만, 고령의 환자)</p> <p>3급: 신체 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중한 전신질환을 가진 환자<br/>     (예: 잘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, 혈관계 합병증이 동반된 당뇨병, 협심증, 심근경색의 병력, 일상 생활에 장애를 줄 정도의 폐질환)</p> <p>4급: 생명에 위협이 되는 전신질환을 가진 환자<br/>     (예: 심부전, 불안정형 협심증, 진행된 상태의 폐, 신장 간질환)</p> <p>5급: 수술을 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의 환자<br/>     (예: 복부 대동맥류의 파열, 폐색전, 뇌압이 상승된 두부외상)</p> <p>6급: 장기 공여를 위해 수술이 예정된 뇌사환자</p> |

| 현 행  |   | 개 정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|---|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|   |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b>III. 치료재료</b>   |   | <b>III. 치료재료</b>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b>제2장 검사료</b>   |   | <b>제2장 검사료</b>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 목  | 세 부 인 정 사 항   | 제 목  | 세 부 인 정 사 항  |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동맥압에<br>기초한 심기능<br>측정시<br>사용하는<br>ACUMEN IQ<br>SENSOR의<br>급여기준 |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시<br>사용하는 ACUMEN IQ SENSOR는<br>혈역학적 감시가 필요한 <u>다음의</u><br><u>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며, 「선별</u><br><u>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에</u> | 동맥압에<br>기초한 심기능<br>측정시<br>사용하는<br>ACUMEN IQ<br>SENSOR의<br>급여기준 |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시 사용하는<br>ACUMEN IQ SENSOR는 혈역학적 감시가 필요한<br><u>다음의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</u><br><br>- 다 음 -<br><br>가. ~ 마. <생략> | (개정 사유)<br>선별급여<br>적 합성 평가<br>결과 반영 |